

의안번호	제 22 호
의 결 연 월 일	2022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변종오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2년 08월 30일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변종오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08월 30일  
발의자 : 변종오, 이동우, 김종필,  
김호경, 박지현, 박진희,  
유재목

### 1. 제안이유

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제명 개정사항과 장학금 지급정지 근거가 되는 상위법률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인용조례 개정사항 반영(안 제1조)

-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나. 지급정지 근거 법령 반영(안 제8조)

-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」 →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### 3. 조례안 : 붙임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 : 충청북도 소방본부 대응총괄과

라. 조례안 예고 : 생략(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4호)

##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」” 를 “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 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제8조의 규정” 을 “제8조” 로, “없는 한 당해” 를 “없으면 해당” 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대원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」가 정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자녀장학금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」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조(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) ① · ② (생략) ③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<u>없는 한 당해</u>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.</p>	<p>제7조(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제8조</u>----- ---- <u>없으면 해당</u> ----- -----.</p>
<p>제8조(지급의 정지) ①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.</p> <p>1.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」 제14조에 해당한 때 단, <u>대원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.</u></p> <p>2. ~ 4. (생략) ②(생략)</p>	<p>제8조(지급의 정지) ①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「<u>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</u>」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<u>대원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.</u>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의용소방대원의 해임) ①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.

1.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
  2.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. 다만,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3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 4.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5.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
  6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②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### □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제22조(경비부담) ①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.

1.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청사·장비·물품 구입비 및 유지·관리비
  2.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경비
  3.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
  4.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·훈련에 필요한 경비
  5.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
- ②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대원의 사기진작과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녀장학금, 국내연수, 국외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